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  
2019. 9. 24.(화) 14:30

혁신과 협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

#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현안과제

---

2019. 9. 24.

**KBIZ** 중소기업중앙회



# 회 순

< 사회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 입 장 / 촬 영

□ 개 회

□ 참석자 소개

□ 인 사 말 씀

□ 간 담

□ 마무리 말 씀

□ 폐 회





## 목 차



1.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	1
2.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	3
3. 보험사의 부당한 대금 할인(꺼기), 지연지급 등 관행 개선 .....	4
4.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	6
5. 정책금융기관의 업력 차별 해소 및 보증료율 인하 .....	8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방안 마련 .....	10
7.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 .....	12
8.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	14
9. 단체표준 인증업체 직접생산 증명 인정 .....	15
10. 승강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도입 애로 해소 건의 .....	16
11.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	18
12.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	22
13.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24
14.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	26
15.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	28



## □ 현황 및 문제점

- 본회는 일본 수출규제조치 강화와 관련, '19.8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
  - 1,000개 응답기업 중 26.8%가 수요-공급기업 매칭사업 참여 희망
    - \* 응답 기업의 기술 구현수준 및 경쟁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보완하여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9월말)
- 중소기업들은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에 큰 기대
  -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44.1%의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기술개발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희망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양산을 위해서는 품질의 안정화,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 최적화 등 수요기업과의 매칭이 선행되어야 함
- 하지만 대기업과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술개발 및 협력사업의 폐쇄적 구조는 개별 기업이 수요기업에 개발 제품을 제안하거나 경쟁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한
  - \* 포스코의 경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9.7월부터 개방형 조달시스템을 통해 납품 희망제품 등록 및 구매부서 검토를 온라인으로 진행

---

## □ 건의사항

---

-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경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개방형 경쟁플랫폼 운영 지원 확대
  - 대기업의 중소기업 개발제품 채택을 통한 국산화율 개선 등에 대해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상용화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 단계 및 대상범위 확대
  - (현재) 시제품 제작 단계까지
  - (개선) 시제품 제작 단계 + 품질안정화 및 기존 제품의 성능개선 R&D 등
- 민관공동기술개발 등 상생협력 기술개발의 경우 공급기업(중소기업)의 열악한 행정인력을 고려하여, 필요서류, 행정절차 등 대폭 간소화
- 특히 금번 본회 조사로 발굴된 중소기업의 기술, 제품은 수요기업 등의 검토 및 검증을 거쳐 향후 기술 국산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요망

### □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등 경영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중기부, '19.5)
- 중소기업 4곳 중 1곳 이상(28%)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 이미 자동화설비 도입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5%로 더 높게 조사됨에 따라 단순 보급률 확대의 사업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양질의 스마트공장(중간2단계 이상) 보급에 중점 필요 \*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중앙회, '17.10)
-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스마트공장 설비간 호환 및 표준화 선행 필요
  - 스마트공장이 한번 구축되면 공급사 변경이 어려워지는 종속 효과 발생 방지 ⇒ 유지·보수 관리 및 고도화에 용이
  - 현재 우리나라의 공급기업 요소 및 고도화 기술은 선진국 대비 40~90% 수준으로 관련 산업육성을 병행할 필요

### □ 건의사항

-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 (고도화)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해 자금·용자·R&D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유도
  - (표준화) 센서, 로봇, 컨트롤러, SW 등 스마트공장 설비 간 호환성 제고 및 표준화 추진

## □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보험수리 시 정비업체는 견적서 발행 후 수리를 진행하며, 수리 완료 후 보험사에 정비요금(부품가격+정비공임)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함
  - 이 과정에서 최종 지급액은 정비업체의 청구금액보다 삭감되어 지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사는 손해사정으로 인해 삭감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 또한, 대기업 직영업체에는 차감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역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손해보험사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

\* 지역별 할인율(부품유통업 기준) : 충남·인천 3~5%, 제주 0%, 기타 지역 5~7%

## [ 실제 사례 ]

- (사례1) 광주 소재 A부품유통업체는 '18년부터 '19년 6월까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약 3천 7백만원에 달함
- (사례2) 대구 소재 정비업체(약 60개) 대상 조사결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약 3억 8천만원에 달함

- 이는 손해보험사가 영세한 부품유통업·정비업 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부당한 관행으로,
  - 부품유통업은 매출 중 보험관련 매출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나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차감 지급으로 인해 유통마진(약 15~20%)의 1/3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인건비, 운송비 등 각종 비용과 재고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청구액 차감 지급 관행이 지속되어 영세한 부품유통업·정비업 사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

- 아울러, 차량 보험수리 시 사고 과실 판정 등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손해보험사는 부품대금(부품유통업체)과 공임비(정비업체)를 송사 종결 시까지 지급하지 않음
  - 송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이미 부품구매 및 정비를 완료한 영세한 중소부품유통업·정비업 사업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 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등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 가중의 원인이 됨

## □ 건의사항

-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부품비·공임비 차감 지급 관행 개선
  - 정비업체의 견적서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하여 차량 수리 前 정비업체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 정비업체는 수리 이전에 손해사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삭감·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자동차 서비스업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정부신고센터' 설치
  - 일방적인 대금 삭감, 대금지연 지급 등 자동차 서비스업의 갑-을 관계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채널 마련
- 중소부품유통업·정비업 사업자들을 위한 공적보험 개발
  - 중소 자동차서비스사업자들이 송사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공적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先지급하고 보험 회사에 대위권 행사

### [ (유사사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 현황 및 문제점

## 【중진공 협동화자금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중진공 협동화사업 중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 지원 예산은 지속 축소 및 현재 신성장기반자금 내 포괄적 관리

\* 300억('06~'09) → 150억('10~'12) → 100억('14~'16) → 예산 편성 없음('17~)

\* 신성장기반자금의 빠른 예산소진으로 조합의 연중 신청 어려워짐

- 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금융지원은 지원항목,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 수준

\* 협동조합은 평균수입('18년 평균 767백만원)과 근로자 수('18년 평균 1.28명) 면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자의 지위로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받기 어려움

## [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금융지원 현황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자금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 10억원 이내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지원

- 조합원 15인 이상, 50% 이상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5억원 이내

-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심사기간 장기화, 복잡한 절차 관련한 문제제기 다수(협동화자금 지원 대상 조합 설문, '17~'19년)

-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지원 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심사하고 있으나,

- 이는 단지조성 등 시설자금 지원 시와 동일한 절차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운전자금)을 위한 심사 과정으로는 과도한 면이 있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심사기간 장기화의 원인으로 작용

##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 공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나, 조합의 영세한 재무규모로 정책자금·금융기관 통한 용자가 어려움
  - \* '공동사업 위한 자금조달'은 '조합원 회비·내부유보금 활용'(70.1%), '금융기관 지원, 정책자금 활용'(9.1%)로 조사(협동조합 실태조사, '18.12)
- 조합법 개정\*에 따라 공동사업 활성화가 예상되나 이를 지원할 정책자금 부족
  - \* 조합법 개정(8.2) :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 배제
- 조합추천을 통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화자금 지원은 조합의 여러 공동사업 중 공동구매에만 국한되어 있고, 다른 공동사업에 관한 정책자금 지원이 없어 대책 필요
  - \* 공동구매 외 공동사업 비율 : 58.1% (중기협동조합 실태조사, '18.12)
  - \*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운전자금) 지원의 경우 조합의 재무구조 보다 사업타당성, 기술성으로 심사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조합 지원에 유리

## □ 건의사항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예산 배정(50억) 및 지원부문 확대
  - 정책자금 내 세부지원 항목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별도 명시 및 50억규모 별도 배정·운용 후 단계적 확대
  - 협동화자금 지원부문 확대 : 원부자재 공동구매 → 공동사업 소부문\*
    - \* 공동생산, 가공, 판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
- 정책자금 지원 시 별도의 협동조합 신용평가 기준 마련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협동화자금 외 정책자금 신청 시 일반 중소기업 기준 아닌 별도의 협동조합 신용평가 기준 적용
-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화자금에 한해 심사기간 단축 및 간소화

### [ 협동화실천계획승인 관련 근거 ]

중소기업진흥법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 시책' 제17조(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의거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협동화사업에 해당) 심사 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직접금융 기능과 시중 은행으로부터의 조달애로를 보완하거나, 연구개발이나 판로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 중기부 소관의 중진공 및 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융자금과 보증

-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기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정책자금 수혜 형평성이 왜곡되는 상황

- 실제 지난해 중진공은 3.7조원 융자 계획 중 54.5%에 해당하는 2조원을 창업기업에 배정하였으며

\* 중진공, '19년 융자 계획(3.7조원) 중 창업기업 비중 : 54.5%(2.0조원)

- 기보의 경우 5.2조원의 신규 보증공급 계획 중 72.8%인 3.8조원을 창업기업에 집중 배정

\* 기보, '18년 신규 보증공급(5.2조원) 기준 창업기업 비중 : 72.8%(3.8조원)

- 이로 인해 일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구조 혁신과 스케일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 확산

## [ 현장의 목소리 ]

- 최근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신청시, 업력이 7년 이상 되는 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여 우수 중소기업이 소외  
→ 기존 중소기업의 신규설비 투자 및 수출향상 위한 투자 지원이 필요
- 일부 정책금융기관의 창구에서 7년 미만의 신규업체에 대해 업력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1% 인하해주고 있어 업력 7년 이상의 기존업체와 차별
- '창업'지원이 강화되면서 창업기업(5년 미만) 지원비중은 매우 큰 편이나, 창업 이후 기업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진  
→ 정책자금 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이후 업력이 증가할수록 성과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필요  
- 중소기업연구원(중기포커스 -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 '17. 8.)

- 한편, 신·기보가 운영하고 있는 보증보험 상품의 보증료가 연 0.5%~3.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증부 담보대출 시 일반 담보대출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
- 대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 정책자금의 지원 취지 및 중소기업의 높은 자금수요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더욱 낮출 필요

[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수요 지수(한은, 대출행태 서베이, '19.7) ]

구 분	2018년				2019		
	1/4Q	2/4Q	3/4Q	4/4Q	1/4Q	2/4Q	3/4Q(F)
대기업	-3	3	0	-3	-3	3	0
중소기업	<b>17</b>	<b>13</b>	<b>10</b>	<b>17</b>	<b>13</b>	<b>23</b>	<b>17</b>

## □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확대를 위해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차별 금지 및 보증 회수 자제
-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책금융 예산 중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 확대
- 신보, 기보 보험료율의 대기업, 중소기업 동일 적용

##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확대 필요성 증대
- 정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19.2조원으로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 67.2조원의 28% 수준으로 미흡
  - \* '18년도 구매액 기준
- '18년부터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요건 강화로 세부품목 축소(766 → 612)
  - 요건강화는 경쟁시장이 조성된 제품군에 한해서 지정한다는 취지였으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경쟁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한 품목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된 의견
    - \* 요건 : 세부품목별 10개 이상 중소기업 직접생산, 공공기관 연간 10억원 이상 구매
- '18년부터 조달청 물품분류 기준 적용으로, 기존 제품이 과도하게 많은 세부품목으로 구분\*되면서 추천요건 충족하지 못해 미지정 → 세부품목 축소
  - \* 조선(조), 스포츠(조) 등 사례(기존 1개 품목 → 조달청 세부품목 기준 14개 등)
- 수시지정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나 '중기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정요건 까다로워, 신속한 지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 지정절차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 존재

## □ 건의사항

### ○ 추천요건 완화

추천요건	현행		→	완화(안)	
	제품	세부품목		제품	세부품목
업체수	20개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5개 이상
공공시장 매출액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조달청 물품분류기준 점검을 위한 TF팀 구성(중기부, 조달청, 중앙회)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품목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

### ○ 수시지정 요건 완화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시지정된 품목의 유효기간은 정기기정 품목 유효기간과 동일

- (1안) 조합이 수시지정 필요성 및 요건 갖춰 신청

☞ 지정절차는 현행 규정(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준용하되, '경쟁제도 운영 실무협의체'에서 수시지정 필요성 등 정성적 판단 후 지정절차 진행

#### [ 경쟁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 ]

- (목적) 경쟁제품 수시지정 추천요건 판단 및 신속한 제도개선 의견 반영
- 위원구성(안)
  - (제도운영) 중기부, 중앙회, 조달청 실무책임자
  - (제도참여) 학계 및 공공구매 관련 주요 협동조합 관계자

- (2안) 매년 초 일정 시기를 정해 수시지정 절차 진행

## □ 현황 및 문제점

- '95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정 시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 선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현행 법령의 취지에도 이어지고 있음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기술보다는 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 초래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근 전시연출산업(박물관, 전시관 등 설계, 제작)을 영위하는 업체간 발주감소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최저가 투찰 증가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 &lt; 최근 1년간 전시연출산업 입찰 현황 &gt;

발주건수	사업금액(원)	예정금액(원)	투찰금액(원)	투찰율(%)
				사업금액대비
총 38건	149,757,447,710	140,183,817,775	98,740,180,000	65.9
40억이상 15건	107,351,683,000	100,633,992,575	69,694,870,000	64.9
15~40억 13건	30,319,246,710	28,249,032,550	20,260,280,000	66.8
10~15억 10건	12,086,518,000	11,300,792,650	8,785,030,000	72.7

- 이러한 저가투찰 문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모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소프트웨어 업계는 10여 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하여 그 결과 '15년도에 일부 제도개선(SW사업 낙찰하한율 60%→80%) 된 사례가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개선 관련 추진경과**

- 제22차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18.6.14)
  - 협상에 의한 계약 투찰 하한율 60%에 대한 문제점 토론 후 최소 80%로 상향할 것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정책건의하기로 함
-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18.6.29)
- 투찰하한율 상향 추진 4단체\* 공동건의문 제출 ('18.9.10)
  - \* 정보통신공사협회 주관 전시조합, 엔지니어링협회,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면담 ('18.9.11)
- 국회 박영선 의원실 방문 ('18.9.19)
- 국무총리 간담회 참석 ('18.11.15)
  - 60%의 낮은 투찰하한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통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
- 공공입찰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18.12.13)
- 기획재정부 방문 및 실무협의 ('19.3.21)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진행('19.4~9, 조달연구원)

## □ 건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모든 물품, 용역에 대하여 낙찰하한율을 80%(SW사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

###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의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 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b>60</b>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b>60</b> 으로 계산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 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b>80</b>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b>80</b> 으로 계산

## □ 현황 및 문제점

- 협동조합에 대한 판로지원제도인 조합추천 수의계약이 판로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연계규정인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5천만원)가 낮아 활용도 저조
  - 조달청에서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구매를 대행하지 않아, 수요기관에서 본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짐

## &lt; 연도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실적 추이 &gt;

구 분	추천건수	활용실적	활용조합
'18년	424	107억원	69
'17년	638	167억원	88
'16년	1,381	447억원	103

## □ 건의사항

-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5천만원→2억원)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p> <p>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p>	<p>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 <b>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b>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b>요청할 수 있다.</b> (이하 생략)</p> <p>1. &lt;삭제&gt;</p> <p>2. &lt;삭제&gt;</p>

### □ 현황 및 문제점

- 단체표준인증제도는 제품심사(2년) 및 공장심사(3년)를 통해 직접생산확인제도보다 더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또한, 단체표준인증제도는 법정자격이 있는 인증심사원이 심사
  - 단체표준인증과 직접생산확인은 심사과정과 기준이 유사·중복되어 중소기업 부담 가중
    - 단체표준 인증서로 직접생산 증명을 같음, 기업 부담완화 필요
- \* 중기간 경쟁제품 611개 세부품목 중 단체표준 인증품목은 137개(22.4%)

### □ 건의사항

- 단체표준 인증업체의 직접생산 증명 자동 인정
    - 직접생산확인기준과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 통일화
    - 공공구매정보망과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 간 시스템 연계
- \* 제도시행으로 인한 조합 수수료 감소는 인증조합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19.3.27)에 따라 800여 페이지의 설계도서와 기술서류를 작성하여 승강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작·설치해야 함
  - 승강기 설계도서 및 기술서류 작성에 6개월 이상, 설계심사와 안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기간도 6개월 이상 소요됨
  - 유럽의 EN 기준의 인증부품(9개 품목) 수 대비 국내 인증 기준의 부품(20개 품목)종류가 많고 인증수수료(설계심사, 안전성 시험비) 시험용 부품제작, 설계, 시험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
- 승강기 제조 및 부품제조 중소기업들이 개정된 인증 기준에 따라 모델인증을 받고자 하지만 인증비용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 인증비용은 1개 업체당 약 5억 5천만원을 3년 주기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량 생산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해있음
  - ※ 모델 당 인증 비용은 인증수수료(약 1,500만원)와 시험용 시료제품 제작, 설치비(약 7,500만원) 설계·시험비(약 500만원)의 합계금액 9,500만원이 소요(1 업체당 5개 모델 예상)
  - 기술력이 있고 자금여유도 있는 대기업조차 개정 된 기준으로 모델 인증을 완료한 업체가 없으며, 부품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하여 일부 비표준 소량생산 부품은 인증이 없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메이저 기업이 국내 시장의 8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도산 또는 업종을 전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지원이 시급함
- 한편, 각각의 현장에 동일한 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를 중복해서 납부하는 부담 있음

- 모델 승강기의 개별인증(설계심사)수수료를 납부한 후 설계 및 기능이 동일한 모델의 승강기를 동일한 현장에서 여러 대 설치할 경우에 개별인증(설계심사)수수료를 첫번째(100%) 4,642,000원을 납부하고 두 번째(50%) 2,321,000원, 세번째(25%) 1,160,500원, 네 번째(10%)부터 462,000원의 설계심사수수료를 납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중소승강기업계 애로사항 ]**

- ① 준비기간 절대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그동안 기술 설계서류를 제출,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 왔으나 제도변경으로 14개 부품중 비표준 소량생산 부품 업체들이 인증비용 과다,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증지연 및 인증 신청 기피 ※ 설치완료 후 검사를 못 받아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② 승강기 모델 및 개별인증 신청불가(승강기업계 인프라 부족)
  - 법, 시행령, 규칙공포 및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와 동시 시행
  -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체 모델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자연도태
- ③ 인증 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국내산 승강기 가격 경쟁력 상실
  - 대량 생산하는 외국기업 대비 소량 생산하는 중소기업 인증 비용의 단가가 높아서 제품의 경쟁력 상실
- ④ 과다한 인증비용 투입으로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도산 위기
  - 비표준 제품 또는 저층용을 소량으로 생산, 설치하는 중소기업들이 3년 주기로 모델 인증비용 반복 투입 및 자금압박(모델당 약 1억원)
- ⑤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휴일 및 심야출동 서비스 수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정처벌 우려
  - 인력 부족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지연우려/고층 아파트 입주민 불편
- ⑥ 승강기의 시스템은 운행 중 비정상적인 상황인 경우 운행 중 정지 하도록 설계, 제작 하였으나 노후부품 고장으로 멈춤, 갇힘 시 중대고장으로 분류 및 유지관리 업체 가중처벌(면허취소, 과징금 과다)
  - 제도를 악 이용한 "갇"질 사례가 발생하여 범법자 양산(정상인 3주 이상 진단서 발행)

**□ 건의사항**

- 유럽의 EN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시행 유예
  - \* 해외사례 : (독일) 유예기간 3년 후 시행, (일본) 법 공포 8년 경과되었으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미 시행
- 개별인증(설계심사) 수수료 면제
- 모델인증 비용 지원
- 인력부족, 심야·공휴일 출동 등 특수성을 감안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 □ 현황 및 문제점

- '18. 10. 16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 부여
  - \* (기존) '24년까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한하여 등록(약 2,000종), 1차 510종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339종 등록 완료(66%)
  - (개정) '30년까지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16,000종) 등록

## ① 과도한 물질 등록비용 부담 예상

-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화학물질이 2,000종 → 16,000종까지 대폭 늘어나 물질 등록비용 발생에 따른 화학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 유해성 시험자료 등 물질 당 최대 47개 시험자료 생성 요구
- < 1개 화학물질 등록 시 예상 최대 비용(GLP 시험기관 견적금액 평균) >  
(단위 : 백만원)

연간 제조·수입량	시험 자료 생산 비용	협업체 운영 비용	총 액
1천톤 이상	2,000	40 (1개社 기준)	2,040
100톤~1천톤 미만	600		640
10톤~100톤 미만	260		300
1~10톤 미만	50		90

※ 단독등록 가정 시 / 유해성평가비용, 동질성자료비용, VAT 등은 제외

- 염료·안료 중소기업은 최대 400종의 화학물질 추가 등록이 필요하여 최악의 경우(물질 단독 등록, 시험자료 면제 없을 경우 등) 1천억 이상의 비용 소요 예상, 공장의 해외 이전 또는 폐업 고려

- 업계 건의로 유해 분류표시가 없는 물질이나, 심각하지 않은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시험 항목을 축소하여 등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업계에서 체감하는 등록비용 부담은 많이 줄어들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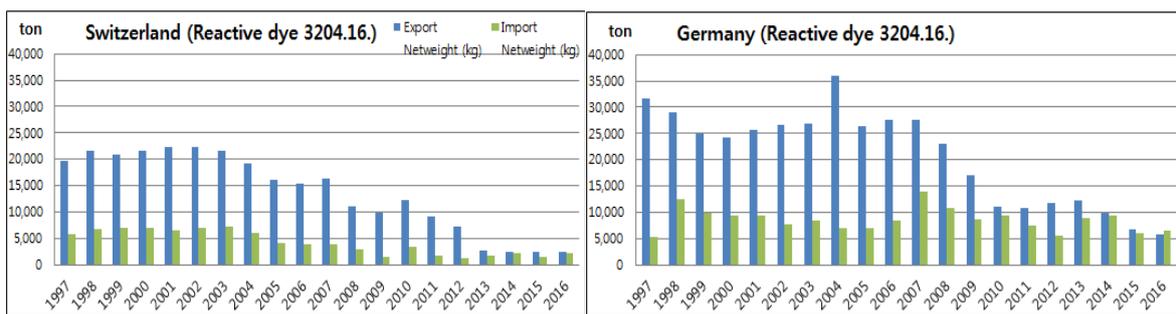
## ② 산업 및 경제 영향 분석 없는 무리한 법률 시행

- 등록 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제조·수입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한 기업 수익의 감소는 폐업·도산 및 근로자 대량 실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개정 화평법의 모태가 된 EU REACH('07. 6월 시행)의 경우 등록 마감 시한('19. 6. 30)이 경과한 현재 등록률이 17.1%\*에 불과, 유럽 화학 산업 몰락의 주된 역할을 함

\* 사전등록물질 145,299개, 등록완료물질 24,902개('19. 8. 14)

- 반응성 염료 품목을 사례로 본다면 과거 유럽에서 제조·사용했던 약 1천종의 물질 중 단 100여종만 등록 완료, 과거 염료 시장을 선도했던 독일·스위스는 EU REACH가 시행된 '07년 이후 수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스위스 및 독일의 반응성 염료 수입·수출 변동 추이>



- 이에 따라 업계 선두를 유지하던 독일 DYSTAR 스위스 CLARIANT 등의 업체가 인도·미국에 매각되고 생산 공장도 인도·중국 등으로 이전
- 유럽 중소기업 또한 REACH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선정한 중소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법률 10개 중 REACH가 가장 첫 번째로 선정('13. 3. 7일 EC 보도자료)

- 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밀 화학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개정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진행되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개정 화평법 시행 이후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전무

\* 국내 정밀화학산업 생산액 비중(14), 제조업의 3.1%, 화학산업의 20.6% 차지

- 대기기업은 주로 화학물질을 대량 생산·판매하여 등록비용 회수 가능,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 ③ 전방산업 붕괴로 인한 국민 후생·안전 위협

- 개정 화평법에 따른 과도한 등록비용으로 인해 원료가격이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

- 등록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 농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제품 가격 인상은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 등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사업 포기 및 한정적 제품 생산에 따라 연관 전방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

- 대표적으로 유기 염·안료, 표백제, 섬유 보조제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염색 가공업체들은 원자재 수급(수입 및 국내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원단 제조업과 봉제 가공업도 침체, 해외 이전 가속화 및 일자리 감소 우려

- 결국 저품질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상황 발생,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큼

\* 예) 염·안료 - 염색 - 섬유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붕괴 시 의류업체는 저품질의 화학물질을 사용한 중국·동남아 등의 수입 원단을 사용, 결국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도료, 잉크, 계면활성제, 접착제, 고무소재 등의 전방산업도 유사한 결과 초래 예상)

## □ 건의사항

- 정부, 기존화학물질 데이터 직접 생산 후 배포(ex. 일본, 대만)
  - 정부가 직접 자료를 생산하여 물질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기업의 부담 또한 절감 가능
- 개정 이전의 화평법처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하여 등록
  - 개정 화평법으로 등록 의무 물질을 1톤 이상 전체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것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며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
  -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핵심은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물질을 기업이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품 보완 없이 이윤을 추구한 데 있음
  - 즉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것이지만 안전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물질에 대해서까지 자료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및 비용 낭비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물질 등록비용 지원 확대
  - 중기부·환경부·산업부 부처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 부처합동 화평법 산업계 이행지원 방안 발표(17. 9. 28) ]**

  - 중기부 지원 사업
    - 화학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긴급경영안전자금 '18년 1,250억원)
    - 화학물질 등록 쏠 과정 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기부·환경부·산업부)
    - 영세 화학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
    -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이용 확대 등

- 실질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물질 등록 비용에 대한 중기부차원의 지원 예산 확대 절실

##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을 사업장(시설)의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 시설 개선비용 발생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 중소기업 사업장의 낮은 화학사고 발생률, 대-중소기업간 유해물질 취급량·배출량·사고발생 영향범위 등 차이를 간과

## [ 화관법 중소기업 이행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19.7) ]

-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 특히, 신규설비 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 비용 발생하며,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19.12.31)이 부여되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 34% 차지
  -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복수응답)
    - ▶ 물질의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91.4%) 등
-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적용규제 413개→66개) 적용받으나,
    - 실제 유·누출 시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세탁소, 전자담배 판매업 등 극소량 취급시설만이 이에 해당되어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피뢰침, 방지턱 등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한 설치기준 적용
    - 중소기업이 기타 통풍·냉방장치, 계측설비·비상차단장치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여 강화된 화관법 시행('20.1.1) 시 중소기업 폐업 위기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 애로 사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건물 연면적이 약 1,000㎡ 당 피뢰침 설치비용은 1,500만원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며 오히려 피뢰침이 낙뢰를 끌어당겨 위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당장 올해 말까지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설치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황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가 제정·시행(19.9.2) 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이 세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
  -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사업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취급시설 기준의 유예기간 연장조치 필요

## □ 건의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및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화 필요
- 화관법 시행(15.1.1) 전 설립한 사업장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
  - (현행) '19. 12. 31까지 → (개정) '21. 12. 31까지
-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기부차원의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필요

\* 예) 경기도, '19.7.18일부터 영세 뿌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1곳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용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수리 시, 완성차업체에서 공급하는 OEM부품(순정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중소 부품산업 활성화에 한계
    - 비싼 부품비로 인해 수리비 및 보험료 증가로 소비자 부담도 가중됨
  - 민간인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15.1.8. 시행)하였으나,
    - 국산 완성차업체의 디자인보호권(20년 간 독점적 권리) 등록 및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독점적인 구조 등으로 동 제도 시행에 애로\*
- \* 디자인보호권 : 수입차의 경우 252건에 불과하나, 국산차 4,868건 보유  
 \*\* 디자인권 침해시 완성차업체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금지청구(113조), 손해배상청구(115조)가 가능하며, 침해죄(220조)로 부품회사를 형사고발도 가능  
 \*\*\* 인증이 합격된 대체부품 중 출시된 제품은 대부분 엔진오일, 부동액 등의 범용제품
- 이에 따라,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디자인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산자위 계류 중임

## &lt; 개정안 주요내용 &gt;

구 분	현 행	민병두 의원안	김현아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박찬우 의원안
대체부품에 미치는 디자인권 보호기간	20년	36개월	60개월	45개월	60개월

\* 출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18.2.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 디자인 보호를 통해 자동차·부품 디자이너 보호가 법의 기본 취지이지만, 자동차 부품은 고가이면서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과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도 필요
- 일반적으로 자동차 교체주기는 20년보다 짧으므로 현행법상 대체부품이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

-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대안으로서 국토부,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완성차업체가 대체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구두합의(17.9) 하였으나, 법적효력이 없어 중소기업업체 참여는 저조
  -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국산차 대체부품에 대해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좁은 내수시장으로는 대체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가 어려운 상황
  
- 또한, 자동차 사고 배상시 대체부품이 보험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사는 대부분 순정품으로 배상하고 있음
  -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정비시에도 순정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증가하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증가

\* 자동차보험 손해율 : 보험료 중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액 비율

---

## □ 건의사항

---

-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 1차 협력업체, 대체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권 제한 대상부품 선정 및 승인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및 대안마련 필요
  
- 자동차 보험 적용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체부품 우선 사용 근거규정 신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새 부분품’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차량 수리시 ‘인증대체부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

## □ 현황 및 문제점

##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요 및 현황】

- 최근 국방부는 '22년부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중기부, 과기부, 산업부)와 협의 진행 중

## &lt;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개요 &gt;

구 분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제도목적	기업의 제조·생산인력 지원	연구기관의 R&D인력 지원
지정업체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산학협력 5~9인 벤처기업포함) * '16년부터 보충역은 중견기업에도 배정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국공립 및 대학 연구기관 등 * '13년부터 대기업 배정 중단
복무기간	(현역)34개월 / (보충역)26개월	36개월
복무대상	학사 이하 학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

##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의존도】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활용업체는 약 1만개, 복무인원은 약 3만 6천명으로, 동 제도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여도는 상당히 높음
  - 산업기능요원의 공업 분야 복무비중은 94.9%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중
  -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대·중견기업(9.6%)의 3배 이상인 29.1%가 중소기업에서 복무 중 \* 산업지원분야 관리현황(병무청, '18.12)
- 실업난 속에서도 64.7%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향후 인력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중기연구원, '18)

-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기능 및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부족한 인력 수급을 충당하고 있음

\* 규모별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 (30~99인) 6.85% vs (500인이상) 1.4%  
 자료 :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현황 및 분석(산업연구원, '13)

- 본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복무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으로 제도 축소·폐지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이에 제도 활용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동 제도를 확대 또는 최소한 현행 유지하길 원하고 있음

\*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 : 한정된 배정 인원(30.7), 잦은 전직(24.4) 順  
 \*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인력사정 : 부족함 52.4%  
 \* 향후 운영방향(%) : 산업기능요원 유지·확대(83.8), 전문연구요원 유지·확대 (85.1)  
 자료 :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중앙회, '19)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필요】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대부분이 10인 미만 규모로 영세하며,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연구인력 및 자금으로 운영되어 연구개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

\* '17년 대기업 대비 中企 1개사당 비중 : (평균 연구원수) 4.7% (연구개발비) 1.3%  
 \* '19년 中企연구소 중 연구원 10인 미만 영세연구소 비중은 93.2%  
 자료 : 중소기업 R&D투자 현황과 전망(중기연구원, '19)

-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對 한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의 소재 국산화가 국가적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과 고려가 높아져야 할 필요

\*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책 1순위 :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자료 : 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중앙회, '19)

- 따라서, 부족한 병역자원 확보는 산업현장의 부담이 없는 선에서 다른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함

---

### □ 건의사항

-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현행 유지

## □ 현황 및 문제점

- 단지 형태로 조성된 유통상가는 영세 소상공인의 집적지로 전국적으로 100여 개에 이르고 수만 명의 영세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 이를 규율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점포로 규제 대상 취급을 받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은 ‘전문상가단지’\* 건립에 대한 지원만 규정(제20조)
- \* 전문상가단지 :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호)
- 유통상가는 대체로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전문 유통단지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대다수 상가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차장 확충, 화장실 개선 등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상황
  - 그러나 유통상가가 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상가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인정을 받는 우회적 방법을 활용 중
- 그러나 전통시장 인정권자인 기초지자체들의 이해 부족으로 법적 요건과 관계없이 상인회 결성을 요구하거나, 지자체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등 애로 발생
  - 또한,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은 기존 재래시장 형태를 갖춘 시장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어, 유통상가는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

- 아울러, 주로 산업용재·전자제품·의류 등 전문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상가는 같은 영세 도·소매업 집합체이나 재래시장 형태의 전통시장이나 가로(街路)를 중심으로 발달된 상점가와는 구별되므로,
  - 시설 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전통시장 인정을 받도록 하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2030)에 맞춰 산업단지 현대화·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문 유통상가를 함께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미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
- \* 첨단 유통·물류 시설확충 지원, 공공주택, 기숙사, 교육, 연구시설 등 연계, 일자리 창출

---

## □ 건의사항

---

-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상가단지'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전통시장법 개정)
  -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상가단지를 전통시장법 상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지원예산 확보
- 유통상가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전국 유통상가 실태조사 및 기초통계 확보
    - \* 상가 수, 입점업체 수, 면적, 조직 현황, 평균 매출액, 지원사업 수혜여부 등
  - 유통상가 시설 개·보수 지원
    - \*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대, 도로 확장 등
  -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원, 조직화 독려
    - \* 공동판매, 통합홍보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서 유통상가 제외
  - \* 별도 유통업체 규정 신설(예.소규모점포 집적단지)

